

1. 개정이유

KTX 등 대체교통 수단의 발달, 인터넷을 활용한 버스 예매 방식의 활성화 등으로 터미널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여, 과거 터미널 이용이 활발하던 시기에 수립된 기준들을 현실화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최소 매표창구 설치기준 완화(여객자동차터미널규칙 별표)

1일 터미널 이용 인원수에 따라 1개~40개로 규정되어 있던 최소 매표 창구 설치 기준을 1~10개로 완화하고, 무인발권기 1대당 유인 창구 인정 기준을 당초 0.6개에서 1개로 완화

나. 터미널 배차실 설치기준 완화(여객자동차터미널규칙 별표)

현재 배차실은 터미널 1일 이용 인원수에 따라 설치 면적이 차등화되어 있으나, 이를 일괄적으로 1개소 설치로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 사무실내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허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전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1일 이용인원 (인)	대표실		대합실 (㎡)	정류장소 (㎡)		승강장 (승차 대기장 (㎡)	주차장 (유도차 로, 주차장 소 포함) (㎡)	화장실				사무 실 (개소)	안내 실 (㎡)	배차 실	승무 원 휴게 소 (㎡)	간이 세차 장 (㎡)
	매표 창구 수 (개)	면적 (㎡)		승차 장	하차 장			남자용		여자용	세면 기 (개)					
								대변기 (개)	소변기 (개)	대변기 (개)						
500 이하	1	4	60	91	46	12	200	2	3	5	2	1개	6	1개소 (사무 실내 설치 가능)	10	20
501 ~ 1,000	1	4	95	91	46	12	200	2	3	5	2		6		10	20
1,001 ~ 2,000	2	7	142	136	91	18	310	2	3	5	2		6		10	32
2,001 ~ 3,000	2	7	237	227	91	30	509	2	4	6	2		6		10	52
3,001 ~ 4,500	3	10	353	338	136	45	749	3	6	9	3		6		10	76
4,501 ~ 6,500	4	13	432	349	136	55	829	4	7	11	3		8		10	110
6,501 ~ 9,000	5	17	607	480	195	78	1,155	5	7	12	3		8		10	150
9,001 ~ 12,000	6	20	821	655	266	105	1,567	6	10	16	4		8		12	200
12,001 ~ 15,500	10	36	1,076	848	344	138	2,036	7	14	21	5		8		15	230
15,501 ~ 19,500	10	36	1,370	1,084	432	175	2,586	8	16	24	6		8		19	329
19,501 ~ 24,000	10	36	1,700	1,350	490	217	3,215	11	22	33	8		8		24	399
24,001 ~ 29,000	10	36	1,799	1,609	643	229	3,474	12	24	36	9		10		24	399
29,001 ~ 35,000	10	36	2,168	1,940	779	277	4,203	15	30	45	11		10		29	489
35,001 ~ 42,000	10	36	2,609	2,336	935	333	5,051	18	36	54	13		10		35	589
42,001 ~ 50,000	10	36	2,877	2,420	967	368	5,211	19	38	57	14		10		35	599
50,001 이상	10	36	3,440	2,894	1,162	440	6,299	22	44	66	17		10		45	719

별표 비고 제3호 중 “0.6개”를 “1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